

**식품의약품안전청 명령**

불기 2566년(서기 2023년) 제599호

지역 내 화장품 신고에 관한 업무 배정에 관하여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라, 방콕을 제외한 관할 각 지역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도 보건소 공무원이 화장품에 대한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도 보건소 약사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4조 "등록자" 정의에 따른 권한과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다.

제1조 지역에서 화장품 등록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배정과 관련한 불기 2562년(서기 2019년) 7월 10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명령 제312/2019호를 폐지한다.

제2조 도 보건소장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도 보건소의 약사를 지정하여, 관할하는 도의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대하여 등록, 신고서 발급, 신고서 갱신, 신고서 변경, 교체 신고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해당 신청은 도 보건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전산망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은 보건부의 화장품 등록, 신고서 발급, 신고서 갱신, 신고서 편집, 교체 신고서 발급에 관한 고시(불기 2561년(서기 2018년)) 및 그 개정안의 기준, 방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품질, 규격, 라벨 또는 기타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하는 주사기, 앰플 또는 바이알 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지방 보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26조를 위반하거나 제6조 (5)항, (6)항, (7)항 또는 (4)항에 따른 장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신고인에게는 위반 행위를 중단하거나 시정, 개선 또는 올바르게 준수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제31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반 또는 준수하지 않는 사실을 대중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제4조 화장품이 공중보건부 장관이 제6조(1)항에 따라 공시한 화장품인 것으로 보이거나, 신고인이 제26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화장품 신고 인증서의 취소를 명령할 권한을 지방보건의사에게 위임한다.

제5조 지정을 받은 담당자 또는 지방보건의사는 매월 말까지 본 명령에 따른 운영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해야 하며, 다음 일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사이의 운영 결과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2)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운영 결과는 10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본 명령은 즉시 시행한다.

불기 2566년(서기 2023년) 9월 28일 명령



파이산 딩쿰

식품의약품안전청장